

【 2018.5.10(목) 건설경제 】



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왼쪽 세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들은 공공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현행 공사비 책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일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한수 세종대 교수(사회), 박 국장,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안윤수기자 ays77@

‘무너진 안전, 공사비 정상화 시급’

‘安全 대한민국 건설’ 토론회서 국회·정부부처·건설업계 한목소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선 공사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건설업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 관련기사 2면

예산과 계약법을 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감대를 형성했고, 기획재정·행정안전·국토교통 등 국회 3대 상임위원회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기재부는 종합심사나찰제 균형가격 개선 등 덤핑 방지책을 보완하고, 국토부는 9월까지 적정 공사비 확보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안 의원은 “공사비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 안전도 없다”며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6선의 문희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축사에서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싸면 쌀수록 품질은 형편없다”며 “국가가 국민 안전을

국토부, 적정공사비 확보 로드맵
기재부, ‘덤핑 방지책’ 보완 추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적정 공사비 문제를 잘 풀어할 때”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역시 “눈 앞의 재정부담보다 국가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공사비 정상화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유재중 행정안전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과 입찰시스템 정상화를 통해 ‘제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정의로운 건설 상생문화 정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 부처들도 ‘공사비 정상화=안전한 대한민국’이란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특히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종합컨트롤타워 신설에도 동의했다.

손명석 국토부 1차관은 “적정 공사비 확보가 국민안전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라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투자를 양에서 질로 전환하는데 핵심이 적정 공사비”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9월까지 세부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재부 국고국장은 예산편성부터 예정가격 산정, 입찰, 계약 이행 단계까지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덤핑방지책으로 △종합심사나찰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 △고난이도 공사 단가심사 적용 △적격심사나찰제 낙찰률 상향조정 등을 검토키로 했다.

업계 대표로 나선 유현 남양건설 상무는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낙찰률에서 배제한 것은 잘한 일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공사비가 깎이게 됐다”면서 “안전관리비는 별개 항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예산집행에 맞춘 계약구조와 국고절감에 맞춘 공사비 절감, 이를 독려하는 감사시스템 등 3박자가 맞물려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에선 종심제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형기자 kth@

충북

강원-충청-호남 연결 '강호축 개발' 건의 서해안권 산업·물류·교통벨트 연계 착수

뉴스포커스

충청권, '한반도 新경제지도' 대응 전략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충청권 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청권이 개발계획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고개를 들자 적극적인 대응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충청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이 선언문에 반영되면서, 동해안과 서해안 중심의 'H형 벨트' 개발계획에서 충청권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시종 도지사는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 개발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나 강호축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개발계획 배제 우려 증폭에 지자체 중심으로 참여 모색

이시종 지사는 조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강호축은 국가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축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강호축이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북선 철도(오송~제천)와 동해북부선(강릉~제진)만 연결하면 목포에서 제진까지 완전 고속화된 강호축 철도망이 구축돼 한반도 X축 교통망이 완성된다며, 향후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조기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2018 충주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및 2019 충주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북한 초청 △산림(묘목)분야 남북교류사업 지원 스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등 충북도의 대북협력사업 추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남도 역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도는 최근 충남연구원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관련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충남도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발맞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충남의 대응전략 △한서해 경제벨트와 남·북·중국 산업 협력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며 전략 수립에 나섰다.

신동현 충남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는 앞으로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중국 일대일로 및 정부 신북방정책과 연계한 철도·물류 연계 방안 등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정립해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철 성균관대 중국성균연구소 박사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협의 확장판과도 같다"며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충분한 전력 공급에 있는 만큼, 전력망 구축 및 연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원표 충남연구원 박사는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에너지 시설과 교통 인프라,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충남은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중 교류·협력 전진기지로서의 태안반도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따라 △자연재해 긴급 구호 및 산림자원 개발 △삼국문화교류 및 평화통일 줄다리기 등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사업과 개발협력 지원 사업으로 대북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사회문화 교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아하! 그렇구나

하도급대금의 조정(4)

원사업자인 갑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갑이 발주자 병으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을은 갑이 발주자 병으로부터 물가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을은 뒤늦게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을은 위와 같은 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곧바로 갑을 상대로 계약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앞서도 설명하였지만 이러한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계약조항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약조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특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도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

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비춰보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그 조항에 한정하여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때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부당한 특약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곧바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6조의2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근거로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길기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